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도 주식연계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한 기술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

1) 현재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부여일 기준 시가준 - 행사가격) × 주식 수’ 총합을 5억원 이내로 제한

2) 이를 20억원 이내로 확대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

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 기술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고, 인재 중심의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5항 중 “자가”를 “자 1인이”로, “5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② ~ ④ (생략)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u>자</u> 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u>5억원</u>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자</u> <u>1인이</u> ----- ----- ----- ----- ----- <u>20억원</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708